



##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작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of Female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

**출처  
(Source)**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2), 2003.9, 238-254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29047>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4.130  
2016/07/08 10:32 (KST)

## 저작권 안내

DBped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ed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오 희 진(영신고등학교)  
고 효 정(계명대학교 간호대학)

###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영문초록
IV. 연구결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달에 따라 직업세계가 다양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취업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도 활발해지고 있다(홍용기, 조국행, 2000).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예전의 고정관념, 즉 남성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고 여성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정형화된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차석빈, 1999).

통계청(2002)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여교사의 비율은 1999년에 중학교는 54.1%, 인문고등학교는 26.0%, 실업고등학교는 28.9%이던 것이 2002년에 중학교는 59.7%, 인문고등학교는 35.7%, 실업고등학교는 34.3%로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여교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규정은 학교라는 특정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현상은 그 유형의 다양함과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간간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희순, 2002).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를 보면 한국여성민우회(1999)의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의 84%가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동부(2003)의 2002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접수된 사건은 총 92건으로 2001년 48건과 비교해 91.7%가 증가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2002)에 의뢰된 성폭력 상담 총 2,216건 중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사례는 297건(22.0%)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희롱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밝혀지고 있다(장윤경, 2002).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이 특히 문제시되는 이유 또한 학교라는 사회가 기본적인 권력구조의 속성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폐쇄적이고도 가부장적 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봉건적인 집단이라는 점에 기인한다(이나영, 1999).

성희롱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1998)에 의하면,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불쾌감(67.7%)을 느끼는 반면, 남성은 친절감의 표시(60.8%)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을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성적관심'으로 보는 사회적 풍潮에 대하여 여성은 약 70%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남성은 약 27%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2000). 따라서 근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어떤 유형의 성희롱도 학교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재 발생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실태 및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경험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험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희롱의 인식정도와 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 II. 문헌 고찰

성희롱이라 함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5934, 제정 : 1999. 2. 8).

성희롱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심은 1993년 발생한 소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직장 상사의 성적 추근거림'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성희롱이 단지 장난이 아니라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계기로 이 과정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법률용어가 되었다(여성부, 2001a).

성희롱의 인식은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쪽, 즉 피해자가 그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내려져야 한다(김정인, 2000).

따라서 여성부(2001)의 성희롱 판단 기준을 보면 원치 않는 행위로서 어떤 행위가 성희롱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은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하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한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반드시 행위자에게 직접 그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여성부, 2001a).

노동부(1999)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남녀 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금지기준(제17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희롱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육체적 성희롱으로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둘째, 언어적 성희롱으로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

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셋째, 시각적 성희롱으로는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패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다.  
넷째,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이 있다.

성희롱의 경험에 따른 발생실태로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2003)의 성희롱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1999.7.1.) 이후 2002년까지 시정신청 접수된 남녀차별(성희롱) 사건은 738건으로 월평균 17.6건, 같은 기간동안 남녀차별신고센터의 남녀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은 5,141건(2002년도 접수 136건, 상담 1,560건)으로 월 평균 122.4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으로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성희롱이 47건(52.8%)으로 가장 많고, 언어적 성희롱 35건(39.3%), 시각적 성희롱 3건(3.4%), 기타 4건(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기관의 유형별로 볼 때, 민간기업이 43건(48.3%)으로 가장 많고, 교육기관 26건(29.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11.2%)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3).

이와 같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일반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천대윤, 1999). 이처럼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적 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요소로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방안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관리자, 교사, 학생 및 행정직원 모두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등은 자체 성희롱 예방책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성희롱

사건 전담반을 구성하여 학교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서 외부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지원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신현옥, 2002).

요컨대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된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무의식적인 관습적 행위일 수도 있으므로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등을 통한 단호한 사후조치가 병행되었을 때 비로소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대구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여교사 분포에 따라 비비례총화표출을 하여 공립중 7개교, 사립중 17개교, 공립고 7개교, 사립고 10개교, 총 41개교의 여교사 7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총 80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8문항, 성희롱과 관련된 특성 4문항, 성희롱에 대한 통념 5문항, 성희롱의 인식 유형 19문항,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방지방안 20문항, 성희롱의 경험 16문항, 성희롱 경험에 대한 특성 5문항, 가해자의 특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성희롱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통념은 임

동진(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희롱의 유형별 인식정도는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1999) 제1조의 2항(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 제2002-2호) 제17조(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와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성희롱의 유형별 인식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여교사들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2이며, 각 유형별로는 시각적 성희롱 Cronbach's alpha 0.82, 육체적 성희롱 Cronbach's alpha 0.84, 언어적 성희롱 Cronbach's alpha 0.82이었다.

## 2) 성희롱의 경험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성희롱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1999) 제1조의 2항(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 제2002-2호) 제17조(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와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다.

## 4. 자료수집 절차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여교사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76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누락이 많은 불완전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737부(73.7%)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통념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정도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kendall's tau를 이용하였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의 인식정도와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검증하고, 사후검증을 위해 Tukey's post hoc contrast를 이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3~63세이고 그 중에서 23~29세가 39.5%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37.0%, 기독교가 30.4%로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7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3~29	291	39.5
	30~39	275	37.3
	40~49	145	19.7
	50~59	24	3.3
	60~63	2	0.3
	No religion	273	37.0
Religion	Protestant	224	30.4
	Catholic	110	14.9
	Buddhist	105	14.3
	Others	25	3.4
	Married	432	58.6
Marital status	Single	305	41.4
	High	6	0.8
	Middle	705	95.7
Economic status	Low	26	3.5
	Very healthy	205	27.8
	Moderate	510	69.2
Health status	Unhealthy	22	3.0
	Public middle	164	22.2
	Private middle	139	18.9
Types of school	Public high	170	23.1
	Private high	264	35.8
	Bisexual	251	34.1
	Girls	189	25.6
Forms of school	Boys	297	40.3
	1~5	369	50.1
	6~10	101	13.7
Teaching years	11~15	131	17.8
	16~20	69	9.4
	21~25	47	6.4
	26~30	20	2.7

이 58.6%로 많았으며, 경제수준은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이 95.7%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69.2%이고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7.8% 이었다. 재직 중인 학교의 종류로는 사립고등학교로서 35.8%였고 학교형태는 남자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가 40.3%로 가장 많았다. 교육경력은 1~5년이 50.1%로 가장 많았다<Table 1>.

## 2. 성희롱에 대한 인식

### 1) 성희롱과 관련된 특성

대상자 중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

상자가 51.3%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48.7%)보다 더 많았다. 성희롱 관련법 제정이 성희롱 발생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그저 그렇다(37.2%), '감소하는 편이다(34.6%)'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생각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59.8%)', '현재처럼 처벌해야 한다(33.4%)'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경험 후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직장 내부의 단체(여직원회, 고충처리기구 등)에 문제를 제기한다(39.8%)'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한다(35.7%)', '직

<Table 2> Sexual harassment related characteristics (N=7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Learning experience on sexual harassment preventive education	Yes	359	48.7
	No	378	51.3
Related laws influences on sexual harassment occurrence	Increased very much	6	.8
	Increased a little	25	3.4
	No difference made	274	37.2
	Decreased a little	255	34.6
	Decreased very much	44	6.0
	Have no idea	133	18.0
Adequacy of current punishments for sexual harassment	It is good enough now	246	33.4
	It must be stricter	441	59.8
	Necessary, but the time is too early	30	4.1
	It is too harsh	20	2.7
Plan after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Report to counseling office or female teachers' meeting in your school	293	39.8
	Talk to friends or coworkers	263	35.7
	Talk or report it to counseling office outside your school	60	8.1
	Talk to family	53	7.2
	Talk to principal or vice-principal	35	4.7
	Keep it to yourself	33	4.5

<Table 3> Misunderstood generally accepted concept on sexual harassment (N=7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t is a factor that makes human relationship harmonious	Yes	11	1.5
	No	726	98.5
It is the expression of close feeling	Yes	18	2.4
	No	719	97.6
It is not serious and doesn't need a solution by law	Yes	45	6.1
	No	692	93.9
It is trivial and private	Yes	62	8.4
	No	675	91.6
It is the expression of sexual concern	Yes	278	37.7
	No	459	62.3

●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장 외부의 단체(성폭력상담소등)에 상담 및 요청을 한다  
(8.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 2) 성희롱에 대한 통념

성희롱은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요소이다'에 대한 문항은 98.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다'에 대한 문항은 97.6%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에 대한 문항은 93.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에 대한 문항은 91.6%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표현이다'에 대한 문항은 62.3%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문항에 따라 1.5~37.7%까지 대상자들은 잘못된 통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3) 성희롱에 대한 인식 유형

성희롱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평점은 3.99점이었다.

3가지 성희롱 유형 중 인식정도는 육체적 성희롱(4.06)이 가장 높았고, 시각적 성희롱(4.04), 언어적 성희롱(3.8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Modes of sexual harassment by recognition (N=737)

	Characteristics	Never serious n(%)	Not serious n(%)	Usual n(%)	Serious n(%)	Very serious n(%)	M(SD)
Physical harassment	Touching the body part (shoulder, hip, hand, etc)	3(.4)	8(1.1)	32(4.3)	212(28.8)	482(65.4)	4.58(.67)
	Hugging or contacting	3(.4)	17(2.3)	74(10.0)	221(30.0)	422(57.3)	4.41(.79)
	Forcing one to dance in a gathering	5(.7)	11(1.5)	162(22.0)	213(28.9)	346(46.9)	4.20(.88)
	Brushing up against one intentionally	1(.1)	14(1.9)	125(17.0)	417(56.6)	180(24.4)	4.03(.71)
	Forcing one to pour a wine in a gathering	4(.5)	21(2.8)	199(27.0)	319(43.3)	194(26.3)	3.92(.83)
	Unwanted pats or pinches	1(.1)	29(3.9)	223(30.3)	372(50.5)	112(15.2)	3.77(.76)
	Blocking one's path or impeding one's movement	8(1.1)	47(6.4)	345(46.8)	258(35.0)	79(10.7)	3.48(.81)
Subtotal M(%)		4(.5)	21(2.8)	166(22.5)	287(39.0)	259(35.2)	4.06(.78)
Visual harassment	Seeing or showing lewd site over the internet	3(.4)	13(1.8)	121(16.4)	265(36.0)	335(45.5)	4.24(.82)
	Staring at one's specific parts	0	18(2.4)	67(9.1)	378(51.3)	274(37.2)	4.23(.71)
	Showing sexual things or pornographic pictures	0	20(2.7)	106(14.4)	304(41.2)	307(41.7)	4.22(.79)
	Offensive sexual graffiti	2(.3)	30(4.1)	188(25.5)	412(55.9)	105(14.2)	3.80(.74)
	Staring at a specific person continually	1(.1)	25(3.4)	268(36.4)	328(44.5)	115(15.6)	3.72(.77)
Subtotal M(%)		1(.1)	21(2.9)	150(20.4)	337(45.8)	227(30.8)	4.04(.77)
Verbal harassment	Sexual comments about one's body parts	7(.9)	32(4.3)	83(11.3)	396(53.7)	219(29.7)	4.07(.82)
	Spreading rumors about one's sexual life	8(1.1)	30(4.1)	157(21.3)	274(37.2)	268(36.4)	4.04(.91)
	Talking about one's private and sexual life openly	2(.3)	37(5.0)	208(28.2)	285(38.7)	205(27.8)	3.89(.88)
	Obscene conversation	5(.7)	12(1.6)	199(27.0)	366(49.7)	155(21.0)	3.89(.77)
	Repeated requests for dates	7(.9)	47(6.4)	163(22.1)	353(47.9)	167(22.7)	3.85(.88)
	Talking about one's appearance sexually	2(.3)	13(1.8)	216(29.3)	418(56.7)	88(11.9)	3.78(.68)
	Saying that you are sexy	1(.1)	63(8.5)	286(38.8)	330(44.8)	57(7.7)	3.51(.76)
Subtotal M(%)		5(.6)	33(4.5)	187(25.4)	346(47.0)	166(22.5)	3.86(.81)
Total M(SD)							3.99(.79)

### (1)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평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신체부위(어깨, 엉덩이, 손 등)'를 만지는 행위(4.58)', '몸을 껴안거나 밀착시키는 행위(4.41)', '희석자리 등에서 블루스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4.20)', '의도적으로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4.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신체부위(어깨, 엉덩이, 손 등)'를 만지는 행위(65.4%)', '몸을 껴안거나 밀착시키는 행위(57.3%)'이며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의도적으로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56.6%)'가 가장 많았다. 반면에 심각하지 않은 성희롱과 전혀 심각하지 않은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6.4%)'로 나타났다.

### (2) 시각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평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것(4.24)',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것(4.23)', '성에 관한 물건이나 나체사진을 보여주는 것(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것(45.5%)', '성에 관한 물건이나 나체사진을 보여주는 것(41.7%)'이며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으로는 '외설적이고 성적인 낙서(55.9%)'가 가장 많았다. 그저 그렇다고 인식한 문항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명하니 뚫어지게 빤히 보는 것(36.4%)'으로 나타났다.

### (3)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평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것(4.07)', '다른 사람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4.04)', '자신의 사생활이나 성적인 경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3.89)', '음담패설(3.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다른 사람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36.4%)', '여

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것(29.7%)'이며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품평(56.7%)'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심각하지 않은 성희롱이라고 인식한 문항은 '섹시하다는 표현(8.5%)'이고 전혀 심각하지 않은 성희롱으로 인식한 문항은 '다른 사람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1.1%)'으로 나타났다.

### 4) 성희롱의 발생원인 및 방지방안

#### (1)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중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한국특유의 접대문화 및 퇴폐적 향락문화(47.2%)', '남성중심의 직장문화(43.8%)', '남녀차별에 근거한 성역할 고정관념(34.2%)'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체계적인 성교육 부재(58.2%)',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미약(5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희롱의 발생원인으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문항으로는 '여성의 과다 신체노출(28.4%)'이 가장 많았고, '직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13.2%)', '여성을 직장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생각(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역시 '여성의 과다 신체노출(7.1%)'이 가장 많았다.

#### (2) 성희롱의 방지 방안

성희롱의 방지 방안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직장문화(47.6%)', '성희롱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38.1%)'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60.7%)'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에 대한 편견, 이중적 성윤리 의식 타파(56.7%)', '성희롱에 관한 예방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설기구 운영(53.2%)', '직장에서의 남녀차별금지(5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본인 스스로 조심(11.8%)', '시민 운동 확산(7.3%)'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직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1.4%)'로 나타났다.

### 3. 성희롱의 경험

### 1) 대상자의 학교특성에 따른 성희롱의 경험빈도

전체응답자 중 성희롱 경험이 없는 경우가 20.2%이고,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8%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경험빈도는 한두 번이 가장 많으며 자주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종류로 알아보면 사립중학교(60.4%)보다 공립중학교(87.8%)의 성희롱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립고등학교(82.4%)와 사립고등학교(83.4%)의 경험빈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형태로 알아보면 남자학교(78.1%) 또는 여자학교(78.8%)보다 남녀공학학교(82.5%)가 성희롱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희롱 내용에 대한 경험 빈도

성희롱을 경험한 전체 응답자 중 경험의 빈도는 '한 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두 번' 경험한 성희롱 문항 중 '듣기 민망한 야한 농담을 들었다(51.8%)'가 가장 많았으며 '회식자리 등에서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하였다(35.7%)',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3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번' 경험하는 성희롱 문항으로는 '듣기 민망한 야한

농담을 들었다(19.0%)'로 가장 많았고, '자주' 경험하는 성희롱 문항으로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2.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성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93.5%)', '보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는 제안을 받았다(84.0%)', '몸을 껴안거나 밀착시키려 하였다(82.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 3) 성희롱 경험에 대한 특성

학교 내에서 성희롱의 발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심각하지 않다(65.3%)'고 응답하였으나 '심각하다(18.9%)'와 '매우 심각하다(2.2%)'고 응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식자리(86.0%)'가 가장 많았으며 '야유회(47.8%)', '교무실 및 특별실(25.4%)', '교실의 복도 및 계단(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후 대상자의 행동으로는 '뭐라고 고집어서 항의하기 힘들어서 참는다(52.2%)'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냥 넘어간다(16.8%)',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15.0%)' 등의 순으로

<Table 5> Frequency of experiencing different types of sexual harassment (N=737)

Items	none n(%)	once or twice n(%)	several n(%)	many n(%)
Heard heavy and dirty jokes	206(28.0)	382(51.8)	140(19.0)	9(1.2)
Was forced to dance in a gathering	392(53.2)	263(35.7)	69(9.4)	13(1.8)
Was forced to pour a wine in a gathering	412(55.9)	239(32.4)	66(9.0)	20(2.7)
Was touched the waist for fun	487(66.1)	217(29.4)	26(3.5)	7(.9)
Heard someone say that you are sexy	493(66.9)	220(29.9)	23(3.1)	1(.1)
Was forced to sit beside the principal or the vice principal in a gathering	512(69.5)	186(25.2)	36(4.9)	3(.4)
Was smiled with greedy intention	511(69.3)	188(25.5)	33(4.5)	5(.7)
Was grabbed the hand intentionally	508(68.9)	200(27.1)	29(3.9)	0(-)
Was continually stared at one's bust or leg while talking	558(75.7)	158(21.4)	20(2.7)	1(.1)
Heard someone say that they were attracted to you without intention	569(77.2)	148(20.1)	20(2.7)	0(-)
Was asked to go out to a movie and dinner only with him	571(77.5)	143(19.4)	23(3.1)	0(-)
Was hugged the shoulder or waist	589(79.9)	137(18.6)	11(1.5)	0(-)
Was tried to be hugged and to be kept in close body contact	607(82.4)	117(15.9)	13(1.8)	0(-)
Was asked to go to undisturbed place to talk	619(84.0)	97(13.2)	19(2.6)	2(.3)
Heard someone say that you are sexually immature	689(93.5)	44( 6.0)	3(.4)	1(.1)
Total M(%)	515(69.7)	83(24.8)	35(4.8)	4(0.6)

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동료 교사들에게 불쾌함을 이야기한다',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이라고 지적 한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다', '평상시 표정으로 비웃어 준다' 등이 있었다.

성희롱 경험 후 대상자의 느낌으로는 '모욕감·당혹

감(78.1%)'이 가장 많았고 '자존심 손상(68.3%)', '분노감(41.4%)', '수치심(34.7%)', '직장에 다니기 싫어짐(2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통(7.5%)', '위장병·메스꺼움·식욕감퇴(6.0%)'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related characteristics (N=7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verity of occurrence	Very serious	16	2.2
	Serious	139	18.9
	Not serious	482	65.3
	Never serious	45	6.1
	Have no idea	55	7.5
Place of occurrence*	Dining together	518	86.0
	Picnic site	288	47.8
	Teacher's room, special activity room	153	25.4
	Corridor or stairs	66	11.0
	Lounge	57	9.5
	In the car (riding together)	49	8.1
	Classroom	36	6.0
	Others	6	1.0
Action after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Just endure because the protest is difficult	314	52.2
	Just let it go because one cannot know whether it is sexual harassment or not	101	16.8
	Request to stop it	90	15.0
	Try to ignore or make oneself agreeable to someone in order to show magnanimity to others	87	14.5
	Acknowledge as a praise about one's body or clothes	1	.2
	Others	9	1.5
Feeling after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Insult . embarrassment	470	78.1
	Hurt self-respect	411	68.3
	Resentment	249	41.4
	Shame	209	34.7
	Unwilling to go to work	132	21.9
	Loss of efficiency	91	15.1
	Anxiety	60	10.0
	Worry . melancholy	53	8.8
	Fear	50	8.3
	Headache	45	7.5
	Stomach disease · nausea · loss of appetite	36	6.0
	Insomnia	26	4.3
	Others	10	1.7
Reasons for not filing the complaints*	Afraid of inharmonious human relationship	555	75.3
	Useless to cope with the situation	277	37.6
	Don't know what to do	238	32.3
	Afraid to get the disadvantage	143	19.4
	Shame	101	13.7
	No proof of evidence	98	13.3
	No bad feelings	14	1.9
	Afraid of a revenge	11	1.5
	Others	8	1.1

\* Multiple answers

<Table 7> Differences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 on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7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cognition				Experience			
		M(SD)	t or F	p	Tukey's	M(SD)	t or F	p	Tukey's
Age	23~29	72.72( 9.77)	1.88	.132		20.81(5.56)	1.72	.162	
	30~39	76.62( 9.30)				19.92(5.18)			
	40~49	75.68( 9.75)				20.70(5.32)			
	50~63	75.04(10.02)				19.46(5.42)			
Religion	①Protestant	73.67(11.02)	9.65	.000*		21.69(5.44)	5.06	.000*	
	②Buddhist	79.00( 8.11)			①②③④)⑤	21.11(5.31)			①②④⑤)③
	③Catholic	75.39( 8.19)			②)①③④⑤	23.95(5.90)			②⑤)①③④
	④No religion	76.63( 8.39)			①⑥)②③④	22.99(6.20)			
	⑤Others	69.08(13.43)				21.36(4.15)			
Marital status	Married	76.27( 9.40)	2.17	.030*		22.20(5.79)	-1.14	.254	
	Single	74.71( 9.87)				22.70(5.83)			
Economic status	High	76.00( .89)	.88	.415		22.33(2.25)	.04	.960	
	Mid	75.53( 9.66)				22.40(5.79)			
	Low	78.08( 9.41)				22.73(7.12)			
Health status	①Very healthy	74.36( 9.50)	2.42	.089		22.40(5.95)	3.54	.030*	
	②Moderate	76.08( 9.65)				22.28(5.62)			③)①②
	③Unhealthy	76.73( 9.37)				25.64(7.86)			
Types of school	Public	78.21( 8.52)	6.95	.000*		22.47(5.65)	.25	.801	
	Private	73.48( 9.96)				22.36(5.95)			
	Middle	77.73( 8.33)	5.23	.000*		21.77(5.75)	-2.51	.012*	
	High	74.16(10.18)				22.86(5.82)			
Forms of school	①Bisexual	76.65( 7.78)	2.50	.083		21.32(5.59)	5.64	.004*	
	②Girls	75.55(11.57)				19.81(5.06)			①)②③
	③Boys	74.81( 8.85)				20.02(5.31)			

\*P < .05

대상자가 성희롱 경험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가 결끄러워 질까봐 (75.3%)'가 가장 많았고 '대응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37.6%)',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32.3%)', '직장에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19.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 4) 가해자의 특성

성희롱의 가해자는 '동료교사(78.6%)'가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8.6%)', '학생 (6.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로는 '남자(92.7%)'가 많았고, 가해자 나이는 '40대(40.2%)'가 가장 많았으며 '50대 (29.7%)', '30대(13.8%)' 순으로 나타났다.

#### 4.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험의 상관관계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계는 없는 것( $r=-.005$ ,  $p=.856$ )으로 나타났고, 3가지 유형인 육체적 인식( $r=.008$ ,  $p=.773$ ), 시각적 인식( $r=-.021$ ,  $p=.438$ ), 언어적 인식( $r=-.013$ ,  $p=.633$ )과 경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희롱의 인식 및 경험 차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특성 중 종교 ( $t=9.65$ ,  $p=0.000$ ), 결혼여부( $t=2.17$ ,  $p=0.030$ ) 학교종류( $t=6.95$ ,  $p=0.000$ ,  $t=5.23$ ,  $p=0.000$ )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 무교, 기톨릭의 순으로, 결혼여부는 기혼자일수록, 학교종류는 공립학교 또는 중학교일수록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에 대한 경험은 대상자의 특성 중 종교

( $F=5.06$ ,  $p=0.000$ ), 건강상태( $F=3.54$ ,  $p=0.030$ ), 학교종류( $t=-2.51$ ,  $p=0.012$ ), 학교형태( $t=5.64$ ,  $p=0.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톨릭, 무교, 기독교 순으로,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을수록, 학교종류는 고등학교, 학교형태는 남녀공학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7>.

## V. 논 의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험 내용 및 경험과 관련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현재 발생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실태 및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학교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표현이다(37.7%)'가 가장 높았고 이는 임동진(2000)의 여성직장인들이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표현이다(39.3%)'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직장인들은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62.4%)'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남성들이 성희롱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오히려 성희롱을 직장생활의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여성부, 2001)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3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부위(어깨, 엉덩이, 손 등)를 만지는 행위(65.4%)', '몸을 껴안거나 밀착시키는 행위(57.3%)' 등을 심각한 성희롱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김영임 등(2001)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희롱의 인식 유형 중 '여성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만지는 것은 성희롱이다'가 92.3%로 육체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임동진(2000)은 성희롱의 장소가 회식자리

(43.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하여 육체적 성희롱 중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63.0%)',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술시중(6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희롱의 경험 빈도는 한두 번이 가장 많았으며 한두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는 79.8%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내 성희롱의 발생정도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자가 71.4%로 나타났다. 이에 경험 빈도에서는 강희순(2002)의 연구에서 대학 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자조교(57.4%)와 여자대학생(26.5%), 정의남(2000)의 연구에서 여고생(41.0%)이 경험한 성희롱의 경험 빈도보다는 높았으나,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2000)의 조사결과 여성공무원(86.8%), 한국여성민우회(1998)의 여성 직장인(84.0%)의 성희롱 경험빈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응답결과는 성희롱의 가해자로 '동료 교사(78.6%)'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영실(1999)의 일반 사업장의 여성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은 직장동료에 의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신체적·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의 경우는 직장상사에 의한 피해 경험이 많았고 여성부(2001)의 공공기관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성희롱의 가해자로 '상급자(78%)'가 '동급자(17.8%)'보다 높게 나타나 성희롱의 발생에 권력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희롱의 가해자로 '학생(6.6%)'을 응답한 것은 최근 들어 증가한 여교사들에 대한 남학생들의 그릇된 관심의 표현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포함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모욕감·당혹감, 자존심 손상, 분노감 등을 느끼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결끄러워 질까봐(75.3%)', '대응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37.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2.3%)'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동진(2000)의 연구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성희롱 발생 당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이

유로 '인간관계가 결끄러워 질까봐(32.7%)', '대응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22.8%)',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16.9%)'의 순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렇듯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상호관계가 필요한 직장 생활에서 동료교사들과의 인간관계에 더 가치를 두어 관계형성도 중요한 일로 보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는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51.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임동진(2000)은 100~5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51.9%, 여성부(2002)에서 공공기관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50.5%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한정자 등(2001)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67.6%, 전영실(2000)은 여성직장인의 86.7%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높게 나타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생각으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현재처럼 처벌해야 한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희롱 발생 시에 가해자를 성희롱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성희롱 근절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성희롱 방지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학교내 성희롱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된 성희롱 고충상담기구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성희롱의 발생원인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부재를 꼽고 있는 데에 반해 절반이상의 대상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은 남녀간에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각 개인은 존엄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직장문화가 형성된다면 성희롱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I. 결론 및 제언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대구 시내 41개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 737명을 대상으로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성희롱의 인식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특성을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51.3%)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성희롱 관련법 제정이 성희롱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37.2%)'라고 생각하였으며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59.8%)'고 하였다. 성희롱을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경험 후 '직장 내부의 단체(여직원회, 고충처리기구 등)에 문제 제기 한다(39.8%)'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반면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등의 성희롱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2.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서 성희롱의 통념을 보면 문항에 따라 1.5~37.7%까지 잘못된 통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이 높은 문항은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표현이다(37.7%)'로 나타났다.
3. 성희롱에 대한 유형별 인식 정도를 보면 육체적 성희롱  $4.06 \pm 0.78$ , 시각적 성희롱  $4.04 \pm 0.77$ , 언어적 성희롱  $3.86 \pm 0.8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어깨, 엉덩이, 손 등)'가 4.58점으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가 3.48점으로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성희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특유의 접대문화 및 퇴폐적 향락문화(47.2%)', '체계적인 성교육 부재(58.2%)'인 반면에 성희롱의 발생원인으로 생

- 각지 않은 것은 '여성의 과다 신체노출(28.4%)', '직장내 여성의 낮은 지위(13.2%)'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직장문화(47.6%)'이고 효과적인 것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60.7%)'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직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1.4%)'이며 '본인 스스로 조심(11.8%)'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5. 성희롱의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교 여교사는 79.8%로 나타났고, 학교특성에 따른 성희롱의 경험빈도는 공립중학교 87.8%, 사립고등학교 83.4%, 남녀공학학교 82.5%가 높게 나타났다.
  6. 성희롱의 경험 내용에 대한 경험 빈도는 '한두 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두 번' 경험한 성희롱 문항 중 '듣기 민망한 야한 농담을 들었다(51.8%)'가 가장 많았으며 '회식자리 등에서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하였다(35.7%)',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3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 경험하는 성희롱 문항으로는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하였다(2.7%)', '회식자리 등에서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하였다(1.8%)'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성희롱 경험에 대한 특성을 보면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발생정도가 '심각하지 않다(65.3%)'고 생각하고 있으나 '심각하다(18.9%)'와 '매우 심각하다(2.2%)'고 생각하는 여교사들도 있었다. 성희롱을 당한 후 행동으로는 '뭐라고 꼬집어서 항의하기 힘들어서 참는다(52.2%)'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 경험 후 느낌으로는 '모욕감·당혹감(78.1%)'이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경험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관계가 깔끄러워 질까봐(75.3%)'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대응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37.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2.3%)'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성희롱 경험에 대한 가해자의 특성은 '동료교사(78.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장·교감(8.6%)', '학생(6.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자의 성별은 '남자(92.7%)'가 가장 많았고, 나이는 '40대(40.2%)'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식자리(86.0%)'가 가장 많았고 '야유희(47.8%)', '교무실 및 특별실(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9. 대상자의 특성 중 학교종류( $t=6.95$ ,  $p=0.000$ ), 학교형태( $t=2.08$ ,  $p=0.038$ ), 결혼여부( $t=2.17$ ,  $p=0.030$ ), 종교( $t=9.65$ ,  $p=0.000$ )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종류( $t=-2.51$ ,  $p=0.012$ ), 학교형태( $t=3.32$ ,  $p=0.001$ ), 종교( $F=5.06$ ,  $p=0.000$ ), 건강상태( $F=3.54$ ,  $p=0.030$ )는 성희롱에 대한 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교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육체적·시각적 성희롱은 높은 반면에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여교사들의 수가 79.8%로 높게 나타나 직장에서 성희롱의 발생이 적잖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의 경험 빈도가 대부분 '한두 번'으로 일회적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발생 정도에 대해서도 절반이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남자교사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며 여교사들의 절반이상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생 및 교사들의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시급하게 실시되어져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기존의 연구들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많을 것이라는 시각 하에 본 연구의 대상자로 여교사만을 조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희롱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남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 조사 뿐만 아니라 여교사와 남교사 간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정도의 차이점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 성희롱 경험 빈도는 한두 번이 가장 많았으나 그에 따른 경험률은 79.8%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향후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략 및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본 연구 및 여러 연구에서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피해자의 질적 연구를 통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희순(2002). 대학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와 대처방안.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미혜(1997). 여대생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회지, 13(1), 29-50.
- 국회여성위원회(2002). 2002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서울: 국회여성위원회.
- 김영임, 김명순, 최숙자, 배종애(2001). 직장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247-260.
- 김영혜, 이화자, 정은순, 김이순(2002).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8(1), 77-85.
- 김영혜, 이화자, 정은순, 김이순, 문선화, 정인경(2001).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196-206.
- 김엘림(1997).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인(2000).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수(2002). 강한 회사를 만드는 성희롱 예방과 대책. 서울: 중앙경제.
- 노동부(1999). 성희롱 예방지침. 서울: 노동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2002).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사례. 서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신성자(1997). 직장내 성적 괴롭힘 발생정도와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직장환경과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 신현옥(200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사례-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향. 서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신혜숙(1996). 성희롱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 유형. 여성전강간호학회지, 2(2), 147-163.
- 양인혜(2002). 초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3).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2). 성희롱 예방 클리닉.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1). 성희롱예방업무편람.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1a).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예방 가이드. 서울: 여성부.
- 여성부(2001b).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및 예방대책. 서울: 여성부.
- 여성특별위원회(2000). 성희롱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 서울: 여성특별위원회.
- 이나영(1999). 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10(1), 163-178.
- 임동진(2000).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창희, 홍용기(1996). 직장에서의 성희롱 태도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25(3), 145-170.
- 장성자(2000). 성희롱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대학교육, 107, 13-18.
- 장윤경(200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사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전영실(1999).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영진(2002).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 학생생활연구, 8(1), 65-70.
- 정의남, 박신애(2000). 남녀고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2), 538-555.

- 지광준(2001). 성희롱 예방과 대책. *사회과학논총*, 11(1), 307-321.
- 지광준(1999). 은폐와 침묵을 넘어 : 성희롱·성폭력의 실상과 예방대책. 서울: 경인문화사.
- 차석빈(1999).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장내 성희롱방지 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4(2), 67-81.
- 천대윤(1999).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서울: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민우회(1999). 성희롱 없는 직장, 건강한 직장 만들기. 서울 : 한국여성민우회.
- 한정자, 김인순(2001).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홍용기, 조국행(2000).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9(2), 219-234.
- Bowers, M.H.(2001). Just Cause in the Arbitration of Sexual Harassment Cases an Exploration of the Ways in Which Arbitrators Have Reached Decisions in Sexual Harassment Cases. *Dispute Resolution Journal*, 55(4), 40-55.
-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Responses of Female Undergraduates to Scenarios of Sexual Harassment by Male Professors and Teaching Assista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3(3), 148-163.
- Fitzgerald, L.(1993). Sexual Harassm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American Psychologist*, 48(1), 34-51.
- Nieves, M.(2000). Joseph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ices, Inc.: Redefining Workplace Sexual Harassment to Include Same-Sex Sexual Harassment and the Effect on Employers. *New England Law Review*, 34(4), 941-980.
- Ryan, J., & Kenig, S.(1991). Risk and Ideology in Sexual Harassment. *Sociological Inquiry*, 61(2), 231-244.
- Sherry, J.E.H.(1995). Employer Liability for GM's Sexual Harassment. *The Cornell H. R. A. Quarterly*, 36(4), 16-17.
- Stockdale, M.S.(1999). The Sexual Harassment of Men: Evidence for a Broader Theory of Sexual Harassment and Sex Discrimination.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5(3), 630-664.

ABSTRACT

##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of Female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

Oh, Hee Jin(YoungShin High School)

Koh, Hyo Jung(College of Nursing, The Keimyu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useful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Survey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harassment were conducte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9 through 28, 2002. A total of 737 female teachers in Daegu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T-test using SPSS /WIN 11.0.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 As to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51.3% of the female teachers had no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about sexual harassment, 37.2% of the female teachers perceived that enactment of related laws had little influence on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59.8% thought strict punishments are required. For teacher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39.8% thought that they must report to the counseling office or female teachers' meeting. On the other hand, 35.7% answered that they would take passive actions such as talking to their friends or colleagues.
- As to the mode of sexual harassment, participants regarded physical harassment ( $4.06 \pm 0.78$ ) as the prominent forms of sexual harassment, followed by visual harassment ( $4.04 \pm 0.77$ ), and verbal harassment ( $3.86 \pm 0.81$ ). Among physical harassment, 'touching a body part (shoulder, hip, hand, etc)'( $4.58$ ) was recognized as prominent forms of physical harassment, while 'blocking one's path or impeding one's movement ( $3.48$ )' was recognized as least prominent forms of physical harassment.
- As to the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79.8% of the female teachers had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public junior high school (87.8%), private high school (83.4%) and bisexual school (82.5%) had higher rates of sexual harassment.

4.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s in sexual harassment, 65.3% thought that sexual harassment was not serious, but 18.9% thought it was serious and 2.2% thought as very serious.
5.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harassers, 78.6% were 'colleague teachers' and 8.6% were 'principals and/or vice-principals'. Ninety-three percent of sexual harassers were 'male' and 40.2% of them were 'in their 40s'.

In most cases, the offender of the sexual harassment was male teachers in the same schools. And more than half of the female teachers replied they had never had any education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which means that systematic education is quite urgent.

**Key words** :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Recognition.